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01,863,636	78,055,909
일반회계	2,269,637,308	68,089,119
특별회계	332,226,328	9,966,790
공기업특별회계	260,976,181	7,829,28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9,149,462	3,874,48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1,826,719	3,954,802
기타특별회계	71,250,147	2,137,504
교통사업 특별회계	23,984,685	719,54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17,040	48,51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355,964	100,679
대지보상 특별회계	425,500	12,765
기반시설 특별회계	105	3
수질개선 특별회계	11,192,662	335,78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0,320,331	309,610
균형발전특별회계	20,066,860	602,0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87,000	8,61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257,89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1,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